

리모델링 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0일	
신 청 인	①대 표 자 (명칭)			생년월일 (인가 또는 고유번호)	
	주 소 (전화번호:)				
단 지 개 요	위 치	(단지명:)			
	세대수		층수 및 동수	층 동, 층 동	
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	시설종류	[]공동주택 []부대시설 []복리시설			
	건축면적	m²	②연 면 적	m²(바닥면적: m²)	
	③주용도		④부속용도		
	공사면적	m²	층 수	지하()층, 지상()층	
⑤총 사 업 비		천원(※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·택지비는 제외합니다)			
착 공 예 정 일		년 월 일	사용검사에정일	년 월 일	

「주택법」 제6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 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	------------

첨부서류	1.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. 다만,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(기존 내력벽, 기둥,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),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. 2.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「주택법」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. 세대를 합치는 행위(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. 「주택법」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. 「주택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.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
------	--

유의사항

「주택법」 제102조제10호	「주택법」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방법

1.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.
2.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·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.
3. ③·④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